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최보운 · 김상훈 · 이달희
윤한홍 · 김선교 · 서천호
이성권 · 구자근 · 고동진
김은혜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수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점자, 수어(手語), 쉬운 언어 그 밖에 장애인수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침구”를 “침구와 장애인수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에서”로 한다.

-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장애로 인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이라 한다)에서 진료받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① 외부의료시설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처우등급, 보안 등의 사유로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②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의 지정, 운영기준 및 이송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전화통화”를 “전화통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영상통화서비스·문자서비스·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취 또는 녹음을”을 “청취, 녹음 또는 녹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을 “청취, 녹음 또는 녹화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취·녹음”을 “청취·녹음·녹화”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

우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지사항) (생 략) <신 설>	제17조(고지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수용자에게 제1항에 따 른 고지를 할 때에는 점자, 수 어(手語), 쉬운 언어 그 밖에 장애인수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 지에 적합한 의류· <u>침구</u> , 그 밖 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 ----- <u>침구와 장</u> <u>애인수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u> <u>장애인보조기기</u>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생 략) <신 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장 애로 인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신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이라 한다)에서 진료받도록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에서-----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7조의2(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 ① 외부의료시설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처우등급, 보안 등의 사유로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

받아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②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의 지정, 운영기준 및 이송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① -----

-----전화통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영상통화서비스·문자서비스·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
-----.

② -----
-----청취, 녹음 또는 녹화를-----.

③ (현행과 같음)

④ -----
청취, 녹음 또는 녹화하려면-----
-----.

⑤ -----
-----청취·녹음·녹화-----

로 정한다.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생략) <u>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① (현행과 같음) <u>② 소장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